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산지원대출 신설〉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81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체계	4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총괄적 쟁점	6
다.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11
2. 조문별 검토	12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2
나. 출산지원대출 대상 및 대출액의 상한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14
다. 대출원금과 이자의 상환 지원(안 제8조와 안 제9조)	17
라. 출산지원기금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20
마. 기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23
바. 부칙	24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7. 23.
- (3) 회 부 일 : 2025. 7. 24.

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 등으로 함(안 제4조).
- 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 라.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출산지원대출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체계

-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시행하도록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대출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출산지원대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②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안 제4조), ③ 대출액의 상한액과 대출 금리(안 제5조 및 제6조), ④ 출생자녀 수별 대출 원금 상환 지원(안 제8조), ⑤ 출산지원대출 이자 지원 요건(안 제9조), ⑥ 출산지원기금의 설치(안 제10조) 등임.

<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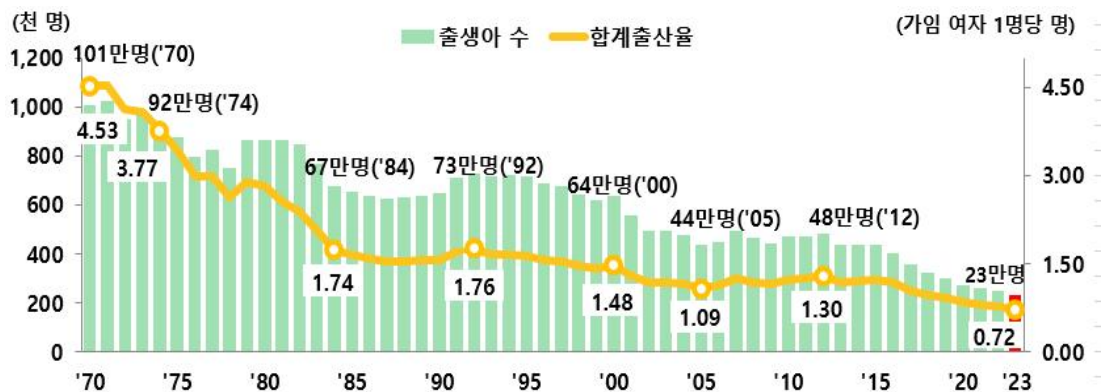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출산지원대출 및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
제2조	정의	- ‘출산지원대출’과 ‘채무자’에 대한 정의
제3조	출산지원대출의 운용 협약	-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산지원대출을 운용

	조 제목	주요 내용
제4조	출산지원대출 대상	-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5조	대출액의 상환	- 출산지원대출액의 상환은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예외 규정을 마련
제6조	대출 금리	-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금리 결정
제7조	설명 의무	- 금융기관은 출산지원대출 신청 받은 경우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도록 함
제8조	대출원금 상환 지원	- 자녀 출산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원금 상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원금 일부 중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비율 규정
제9조	이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출산지원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 규정
제10조	출산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산지원대출의 원금과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위하여 출산지원기금 설치
제11조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
제12조	기금의 용도	- 기금의 용도로 제8조에 따른 대출원금 상환이나 제9조에 따른 이자 지원 등으로 함
제1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출산지원대출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4조	과징금	- 제7조 설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제15조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16조	과태료	-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총괄적 쟁점

- 우리나라의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출생아 수를 보면, 101만명에서 23만명으로 77%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¹⁾ 역시 4.53명에서 0.74명으로 감소하였음.

< 1970년 ~ 2024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2,300여명에서 2024년 23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84명에서 0.74명으로 감소함.

<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

(단위: 천 명, %, 명, 가임 여성 1명당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아 수	272.3	260.6	249.2	230.0	238.1
전년 대비 증 감	-	-11.8	-11.4	-19.2	8.1
증 감 률	-	-4.3	-4.4	-7.7	3.5
1일 평균 출생아 수	746	714	683	630	652
합계출산율	0.84	0.81	0.78	0.72	0.74

1)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대체출산율 2.1 미만일 경우 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대체출산율이란, 한 국가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임.

□ 이러한 출생아 수의 감소는 향후 노동 인구 감소를 불러 일으켜 기업과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증가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연금제도나 복지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사회보장비용의 납부를 부담하는 인구층을 감소시키고, 소비 시장의 축소로 인한 고용 감소 및 경제 활력 저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한 연구²⁾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으나,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대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한 후 반등에 성공하여 현재 1.6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³⁾.

□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중에서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임신과 관련하여서는 사전 난임 검사·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이 있고,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보호출산 및 출생통보제 시행 등이 있으며,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부모급여 인상·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폭넓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2) “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연구”(2024.2. 한국개발연구원) p. 1.에서 인용

3) 독일은 1994년 1.24명→ 2006년 1.33명→ 2021년 1.58명, 스웨덴은 1999년 1.50명→ 2000년 1.55명→ 2021년 1.67명, 프랑스는 1993년 1.66명→ 1995년 1.71명→ 2021년 1.80명으로 파악됨.

< 2025년 기준 임신·출산·양육 지원 주요 정책 현황4) >

	지원 정책	내용
임신	사전 난임 검사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에 대한 지원확대 차원에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 회(회당 100만원 상한)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
	난임시술 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 (이전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 지원했으나, 통합하여 총 20회 지원으로 변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등 19개 질환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둥이 임신에 대하여 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 지원
출산	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는 300만원 지원(단태아는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16개소 설치하여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원

4) “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연구”(2024.2. 한국개발연구원) p. 20.~p. 25. 재구성하였으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임.

	지원 정책	내용
양육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으로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를 아동연령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비용 지원(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돌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돌봄학교를 전국에 도입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이용을 원하는 가정양육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2023년 1,030개 반→2024년 2,315개 반)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 신설(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11만여 가구로 확대(2024년 기준)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명대에 머무르고 있고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신청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상품의 금리를 결정하고
 협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입법
 모델은 출산과 양육의 지원이라는 동기에도 불구하고 자칫 민간
 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사적 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원금 전액을 국가가
 기금을 활용하여 상환해 주는 셋째 자녀의 경우 외의 사례에 대하
 여는 채무상환 불이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외국의 출산 및 양육 지원 모델로서
 헝가리의 ‘미래자녀대출(Babavaro, Baby-expecting loan)’이 있음.

○ 미래 자녀 대출(Babavaro, Baby-expecting loan)

- (도입 배경) 가족보호행동계획의 도입
- (시행연도) 2019년~현재
- (정책 목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정책 대상) 여성이 18~40세에 해당하는 부부
- (지원 수단) 대출 및 이자 지원
- (주요 내용) 만기는 20년이며, 최대 11,000,000Ft⁵⁾까지 대출 가능

* 결혼후 5년 내에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면제, 자녀 2명 출산 시 대출금 30% 탕감, 자
 녀 3명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자료: 보건복지부

5) 헝가리 화폐단위로서 1Ft=4.20원(2025년 9월초 기준)이며, 해당 환율을 적용하면 11,000,000Ft는 4,620만원임.

다.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 및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지원대출 지원은 출산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현금지원 성격으로서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의 증가에 효과가 있을지 불명확하며, 대출받은 금액의 지출 용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우려됨. ○기존의 출산 가정, 난임부부 및 한부모 가정 등과의 차별 문제 및 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에 대한 역선택의 문제, 대부금 탕감의 수단으로서 출산을 악용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	○현재도 아동수당 지원금액의 확대 논의 등을 통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출산지원대출금의 대리 상환을 위한 기금 설치에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 각 호6의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금융위원회	○제정안에서의 설명의무 조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7)와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규제 등 조치권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중 어디에 있는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실제로 자녀를 출산할지 3명까지 출산하여 기금으로써 대출원금의 완전한 상환이 이루어질지를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출산지원대출 및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과 출산지원대출과 채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출산지원대출 운용 협약의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출산지원대출 및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대출”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기획재정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2. “채무자”란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출산지원대출의 운용 협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대출액의 상환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출산지원대출의 금리에 관한 사항
4. 출산지원대출의 신청 및 상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산지원대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산지원대출’은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표명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대출을 통하여 지원받은 현금을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⁸⁾과 그 사실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⁹⁾,

안 제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안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출산지원기금으로 대출원금의 전액 상환을 보장하는 경우는 셋째 자녀의 출생밖에 없어서¹⁰⁾ 나머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8) 예컨대, 출산지원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높은 예금금리 상품 가입이나 부모 중 일방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동차 구입 등의 경우도 제정안의 입법목적에 통하여 보호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9) 통상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의 수령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10)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제8조(대출원금 상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첫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30

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민간회사인 금융기관에 정책 구현을 위한 협약을 강제할 수 없어 보이므로, 출산지원대출 운용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유인이 필요해 보임.

나. 출산지원대출 대상 및 대출액의 상한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어떤 사람이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대출액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하되, 대출 금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출산지원대출 대상) ①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및 예비부부를 포함한다)
2.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하였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4.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

② 예비부부, 미혼모 및 미혼부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출액의 상한) 대출액의 상한은 출산지원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1인당 1억

2. 둘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50
3. 셋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 전액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출산지원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출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 금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출산지원대출의 금리를 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사업연도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설명 의무) 금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 대출 내용,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출산지원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안 제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할 예정’은 불확정적인 상황¹¹⁾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 본문은 대출액의 상한을 ‘출산지원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녀를 출산하여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부의 경우는 최대 3억원을,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11) 자녀를 갖고자 하는 단순한 의지의 표명단계인지 또는 임신 중인 부부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 또는 가구를 기준으로 함이 바람직하고,

같은 조 단서의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후자의 사람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출산지원 대출의 대상에서 먼저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안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출산지원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대출금리를 정부 부처의 장관이 결정하는 입법례와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제1항12)를 들 수 있으나, 해당 법률에서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13)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제정안과 완전히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의 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동일하지는 않은 구조임.

안 제7조에서 규정하는 설명 의무는 금융기관이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¹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3조와 같은 유사한 입법례가 있음¹⁵⁾.

다. 대출원금과 이자의 상환 지원(안 제8조와 안 제9조)

□ 안 제8조는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지원을, 안 제9조는 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9조의6(지도·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3조(설명 의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5)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의 출산지원대출이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의 설명의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해당 법률의 조문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의무이고 안 제7조는 설명 요청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4. (생 략)

제8조(대출원금 상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첫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30
2. 둘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50
3. 셋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 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하지 아니한다.

③ 대출원금 상환 지원의 구체적 기준, 대출원금 상환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자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출산지원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등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자 지원의 구체적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첫째 자녀의 경우 대출원금 잔액¹⁶⁾의 100분의 30, 둘째 자녀의 경우 100분의 50, 셋째 자녀의 경우 대출원금 잔액의 전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출원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채무자가 더 이익이 되므로 상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원금 상환 지원 신청 시점에 대하여도 대출원금의 일정 부분을 상환한 이후가 아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상환 지원 신청을 신속하게 할수록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대출원금 상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녀의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 또는 채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16) 안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일정 부분’을 대신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라. 출산지원기금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근거와 관리·운용,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출산지원대출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규정함.

제10조(출산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대출원금 상환 지원
2. 제9조에 따른 이자 지원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상환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13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출산지원대출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17)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
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신설하는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전입금’

1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
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
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
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
할 필요가 있을 것

등으로, 기금의 용도 사업인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원 등과의 연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금의 재원을 정부 등의 출연금, 융자금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에 의존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에서 출산지원기금의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OECD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혼 무자녀 가구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금을 신설할 필요는 있어 보임¹⁸⁾.

□ 한편, 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2211683호)¹⁹⁾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안정적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금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2211683호) 검토보고에서 발췌

19) 「국가재정법」 별표2에 제72호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내용임.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마. 기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안 제16조는 안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그 경우 이자수입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14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5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안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제69조가 있음²⁰⁾.

다만,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종사자인데 부과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부칙

□ 부칙 제2조 출산대출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아닌,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를 포함시킨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함.

다만, 안 제4조제1항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및 예비부부 포함)뿐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4. (생략)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사람, 미혼모, 미혼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대출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498